

도서관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문공위 전문위원 배중섭

金賢子·曹祥鉉·趙一文·陳治範·金炯孝·韓良順·朴聖泰·洪鍾旭 議員
外 30인으로부터 1987년 10월 5일자로 발의되어 동년 10월 10일자로 당위
원회에 회부되어온 도서관법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법률 제1424호) 된 후 24
년이 경과되어 급변하는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
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도서관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
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특성에 맞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
한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 및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등 도서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등 소극적인
기능수행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유
통,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수행의 현대
적 도서관개념으로 재정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서관의 종류를 전문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교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각각 구분함(안 제3조).
- 다.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서직원의 자격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준사서로 각각 구분함(안 제7조 제2항).
- 라.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서지정보에 관한 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제도화하고, 그 실시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부칙).
- 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교육·문화시설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
- 자.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조직체로서 도서관정보 협력망을 구성하고, 그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할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도록 함(안 제41조).

3. 검토의견

현행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24년간 한차례의 보완개정 작업없이 시행하여 왔던 바, 급변

하는 현대정보·산업사회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 가운데 현행법과 크게 다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서직원의 자격구분에 대하여(안 제7조)

현행법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이외에 자격구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고 있는 사서직원의 자격을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도모하고, 특히 자격기준 및 전문직의 특성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서직의 사기양양과 자질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하여(안 제8조)

개정안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의하면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서관자료가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폐기·제적하여야 할 자료도 영구보전해야 할 비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진대사와 최신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도서관 봉사업무가 경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시행령이 각 도서관 내규에 규정하여 연간 일정량(전장서량의 0.3%~0.6%이내)의 폐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도서관진흥기금에 관하여(안 제10조~제11조)

개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 재원의 조성,

그 운용·관리 및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서관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조성이 가장 필요하므로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법률에서 수많은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도서관진흥기금을 위해서는 정부측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세감면에 관하여(안 제12조)

개정안 제12조(조세감면)에서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의 도서관이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이익의 사회환원 또는 도서관 육성에 대한 민간주도를 적극 유도하는 실질적인 한 장치로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에 관하여(안 제18조)

개정안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에 의하면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도서 및 서지정보에 관한 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자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자료 축적기재의 역할과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체제 및 국제정보유통기구와의 협력·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6. 국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안 제22조)

현행법 제19조(보조)에서는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 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고,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제19조에는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고, 국고보조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고보조가 ‘87년도에 총 16억 9천만원(건립비 보조 16억원, 운영비 보조 9천만원) 정도로 영세한 실정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사회교육·문화시설인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토록 의무화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토록하여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재원 확보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입관료에 관하여(안 제30조)

현행법 제8조(도서관의 사용료)에서는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 제30조(사용료·입관료)에서는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입관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공립의 공립도서관에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도서관의 사용료와 입관료의 개념을 구분하여 특정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입관료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설립목적,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